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3324
------	------

2025.12.18.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주용태)

#### 1. 제안이유

- 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시설로서 서울영화

## 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규정

- 나. 영상산업 지원시설 상영관 관람료 및 그 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조항 마련
- 다. 영상진흥위원회 관련 위원회 필수 규정 사항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영상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

-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 2. 서울영화센터 및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운영 현황

##### 가. 서울영화센터 운영 현황

- 서울영화센터는 중구 충무로 일대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핵심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신진 영화인 발굴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운영 중인 공공 시설임(개관 2025.11.28.).

##### <서울영화센터 운영 개요>

- |  |
|--|
| □ 위 치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38                           |
| □ 규 모 : 연면적 4,806㎡(지하3~지상10층, 대지면적 804㎡)         |
| □ 총공사비 : 565억원('15.7.~'25.8.) ※ 개관 '25.11.28.    |
| □ 운영방식 : 서울경제진흥원 대행('25.2.~'27.12.) ※ 추후 민간위탁 추진 |
| □ 주요시설 : 상영관(3개소), 전시실, 다목적실, 공유 오피스 등           |

층 별	면적(㎡)	구성	사용 용도
10층	244㎡	옥상 광장	옥상 휴게공간, 야외 상영
9층	380㎡	운영 사무실	운영 사무실
8층	402㎡	영화인 공유오피스, 회의실	영화 관련 작업공간, 영화인 소통·교류
7층	390㎡	다목적실	네트워킹, 비즈니스 미팅, 영화 교육
5~6층	627㎡	상영관II(68석/리클라이너)	비즈니스 매칭 스크리닝 지원, 기획 상영
4층	346㎡	전시공간	다양한 주제 전시기획 운영, 영상 관련 굿즈샵 운영
2~3층	644㎡	상영관I(78석/컴포트석)	다양성 영화 상영 및 스크리닝 지원
1층	351㎡	카페, 박스오피스	로비, 매표소, 카페 등
지하1~2층	852㎡	상영관 I (166석/일반석)	최신 음향 기술 기반 상영, 시사회, GV 개최 등
지하3층	570㎡	주차장, 기계실	기계식 주차(16대)

- 동 센터는 상영관 3개관, 전시실, 다목적실, 공유오피스 등 영상창작·교육·상영·전시·교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을 대행하고 상영·교육·전시 등 주요 기능은 용역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신진 영화인 빨굴 및 비즈니스 미팅 지원, 영화제 개최, 멤버십 운영, 대시민 영화교육 프로그램 등 산업·문화·관광을 결합한 운영 전략을 기반으로 영상산업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추진 중임.
- 다만 동 센터의 개관 과정에서 영화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네마테크’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명칭과 운영 방향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운영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동 센터의 운영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운영위원회는 2025년 5월에 설치되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센터의 운영 방향, 프로그램 구성, 개관 준비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였음.

####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 내용	참석
1	2025. 0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및 휴무일 검토</li> <li>• 초기 운영기간 설정 및 대관 행사 적정성 검토</li> <li>• 상영관 운영 용역 방향 검토</li> <li>• 개관 기획 전시 계획 검토</li> </ul>	9명
2	2025. 0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영관 운영 용역 관련 내용 검토</li> <li>• 개관 행사 운영 방향 논의</li> <li>• BI 개발 및 옥상 활용 방안 논의</li> </ul>	8명
3	2025. 0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 개발(안) 보고 및 홈페이지 구축 착수보고</li> <li>• 개관 상영 프로그램 기획 운영 논의</li> <li>• 상영관 운영 용역 발주계획 및 기준 논의</li> </ul>	8명
4	2025. 09. 05.	• 서울영화센터 개관행사 추진 현황 보고	7명

구분	회의일시	회의 내용	참석
5	2025.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관식 초청 추진 인원, 프로그램 논의 등</li> <li>서울영화센터 상영관 운영 용역 착수 보고</li> <li>서울영화센터 개관행사 추진현황 보고</li> </ul>	7명
6	2025. 12.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영화센터 사용료 및 운영규정(안) 논의</li> <li>서울영화센터 포럼 자문, 시설대관 운영계획</li> <li>개관상영 프로그램 추진결과 보고</li> <li>상영관 운영 계획 보고</li> </ul>	6명

- 그러나 동 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인하여 센터의 개관을 앞둔 2025년 9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4명의 위원이 사퇴하였고 2025년 12월 현재까지도 후임 위원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총 9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인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후임 위원 선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2025년 11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동 센터에 대한 영화계의 비판적 여론과 사회적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영화계 인사들이 위원 위촉을 고사하면서 위원구성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나.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운영 현황

- 서울영상진흥위원회는 영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서울시의 주요 영상 산업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 제7기 위원회가 총 18명의 위원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동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8회(소위원회 4회 포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기준과 서울영화센터 운영 기본계획 등을 심의·자문하였음.

#### <서울영화센터 영상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분	회의일시	회의 내용	참석
1	2025. 05.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영화센터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li> </ul>	15명

구분	회의일시	회의 내용	참석
본위 원회	2 2025. 03.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영화센터 운영 기본계획 심의</li> <li>2025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기준 심의</li> <li>2025년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기준 심의</li> <li>서울영화센터 운영계획 보고</li> <li>2025년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보고</li> </ul>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기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li> <li>영상산업 지원 사업 보고</li> <li>서울영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보고</li> <li>2024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기준 심의</li> <li>2024년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기준 심의</li> </ul>	
	3 2024. 0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산업 지원 사업 보고</li> <li>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추진 현황 보고</li> <li>2023년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기준 심의</li> </ul>	14명
소위 원회	4 2023. 02.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영화센터 비전 및 추진방향</li> <li>8층(공유오피스) 공간 이용방안, 상설 필름마켓 운영방안</li> </ul>	6명
	1 2025. 04.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방안, 상영 프로그램 및 상영관 운영사 선정, 관람료 책정, 대시민 마케팅 방안</li> </ul>	6명
	2 2025. 04.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관식 프로그램 및 행사. '25년 상영관 프로그램</li> </ul>	6명
	3 2025. 0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전시 내용 및 방법</li> </ul>	7명
	4 2025. 04. 23.		

### 3. 주요 개정사항 검토

#### 가. 영상진흥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 안 제4조는 영상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p>	<p>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p>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신 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  
-----.

⑥ -----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회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⑭ -----세부 운영에 -----

## 나. 서울영화센터 설치 근거 정비(안 제9조제3항)

- 안 제9조제3항은 2025년 11월 28일 개관한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근거와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

## 다. 서울영화센터 상영관 관람료 및 사용료 등 부과 · 징수 신설(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서울영화센터의 상영관 관람료 및 대관료 · 수강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 회수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5.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p> <p>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	---

- 안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 별표2는 상영관 관람료의 범위를 개인 5,000원~15,000원, 단체(10인 이상)는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별표 2]</p> <p>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관람료 부과기준</th></tr> </thead> <tbody> <tr> <td>• 상영관 관람료</td><td>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td></tr> </tbody> </table>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 상영관 관람료 부과 범위는 공공기관 특성과 민간 영화관 관람료를 고려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향후 상영작의 성격과 센터의 공공성을 고려해 세부 요율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특히 관람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공공성 훼손과 이용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바 감면 대상 확대, 특정 요일 할인, 청소년 · 예술인 · 고령자 대상 탄력요금제 등 공공성 보완 장치가 병행되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민간 상영관의 영화 관람료가 14,000~15,000원 수준<sup>1)</sup>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센터의 관람료 상한 기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설립 취지와 정책목표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공공성 및 접근성 강화 관점에서 관람료 상한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sup>2)</sup>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관람료는 조례에서 정한 부과 기준 범위 안에서 영화계의 의견 및 시설 특성, 민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라. 영화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 안 제10조제2항은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u>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u>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u>

1) 일반 상영관 2D영화의 주중 · 주말 기준

2) 참고로 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시네센터’는 7,000원, 민간 독립영화관인 ‘인디스페이스’는 1만원 수준의 관람료를 부과하고 있음.

<p><u>으로 한다.</u></p> <p>(③) ~ (⑨) (생 략)</p>	<p><u>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p> <p>2. 위촉직 위원</p> <p>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 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p> <p>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 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	---

-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권한을 시장에게 두고 있으나, 동 조례 제10조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동 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원 위촉시 위탁기관인 서울경제 진흥원 대표이사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10조제1항**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영화센터 위탁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제10조제1항과 충돌하는바 “지원시설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 한편 안 제10조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은 인정되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24.12.)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적정인원을 15명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수 확대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위원 일부가 사퇴하고 전문가들의 위원 위촉 고사가 이어지면서 후임 위원 위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 위촉 주체를 위탁기관으로 수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 위촉 권한을 시장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324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회

## 1. 수정이유

-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 위촉 주체를 위탁기관으로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 위촉 권한을 시장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u>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 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u>  ③ ~ ⑨ (생 략)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 한다.</u>  1. · 2. (개정안과 같음)  ③ ~ ⑨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관 부서장이 된다”를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세부 운영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사람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⑫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시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별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관람료	개인: 5,000원 ~ 15,000원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본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	⑤ 위촉직 위원----- -----.

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신 설>

-.

⑥ -----  
----- 담당 사  
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신 설>

⑩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⑪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⑫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  
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p>다.</p>
	<u>&lt;신 설&gt;</u>	<p><u>⑬ 영상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u>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u>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u>		<p><u>⑭ ----- 세부 운영에 ----- ----- .</u></p>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 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p>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 ----- ----- ----- 시에 ----- 한정한 다).</p>
② ~ ⑤ (생략)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p>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u>&lt;신 설&gt;</u>	<p>제9조의2(상영관 관람료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의 상영관 관람료를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p>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람객 중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6. 그 밖에 영화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위탁기관이 상영관을 단체 등에 대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상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수강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신설>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화 감독, 작가 등 영상산업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서울영화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1]

서울영화센터의 위치(제9조제3항 관련)

이름	주소
서울영화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신 설>

[별표 2]

상영관 관람료 부과기준 (제9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관람료 부과기준
• 상영관	개인: 5,000원 ~ 15,000원
관람료	단체(10인 이상): 개인 관람료의 80% 내외